【 3 】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발의연월일 : 2008. 4.
발 의 자 : 장 재 훈 의원
외 6 인

1. 제안이유

○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이념과 주민과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내지 제6조)

나.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내지 제18조)

다. 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8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성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보전하거나 육성하는 마을 만들기(이하 '행복마을 만들기' 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가 목표로 하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양주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기능과 자연이 조화된 도시환경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동네에 있는 거주지, 거리 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행복 마을" 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만들기" 란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터인 마을을 편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행복마을 만들기 주체" 란 양주시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등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이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행복마을 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시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 만들기 주체의 책무) 마을 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주민과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행복마을 만들기

제7조(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시장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시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시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 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 ①시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양주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4. 행 · 재정 지원사항
5. 기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대상)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양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3.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 설치 운영 사업
4.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5.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6.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7.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10조(사업 신청) ① 마을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읍면동에 걸쳐 추진할 사업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친 후 관련 읍면동장의 협의를 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가 지원)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 만들기 전문가의 지원에 필요한

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마을 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때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4. 기타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4조(분석 및 평가)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여 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마을 만들기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포상 등) 시장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이나 추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 정산등에 관해서는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제19조(설치) 마을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 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추진사업의 분석 및 평가
5.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시 관계공무원 3인 이내
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3.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주민 4인 이내
4.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조경·환경 등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5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 등)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살기좋은지역담당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살기좋은지역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양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7조(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정보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형태는 시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 4 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한다.(단, 제3호의

어린이놀이터는 4년으로 하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어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로 한다)

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보수

2.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

3. 「주택법」 제2조제7호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타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단지내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단, 전기요금은 제외한다)

5. 단지내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 단지내 하수도 시설 정비